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관련 규제 강화 등〉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90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 마련	3
2.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의무 확대 등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2025. 9. 18.
3. 회 부 일: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목적·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

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2조 등).

Ⅲ. 검토의견

1.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 마련

-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항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및 그 처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수사기관은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2.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및 그 처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함.
- 이 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¹⁾에는 그 법적 근거 및 목적,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함(제18조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범죄의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2.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범죄 수사 또는 공소 제기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²⁾가 투명하지 못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³⁾.
-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로부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법 제18조제2항제7호)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및 처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가 개인정보를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적 근거·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실제로는 각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음.

3) 윤태인,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매년 수백만 건...“통제 장치 필요, YTN, 2025. 9. 14.

최성수,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최소한에 그쳐야...관련 법 개정 필요“

(위 기사는 개인정보 중 통신자료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임.)

○ 또한, 수사기관이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문서로 하도록 절차를 규정한 입법례도 상당수 있음.

○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검찰총장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사후통지절차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⁵⁾에 따라 법원, 검사 등의 수사기관

4) 【참고자료】 정보 제공 절차 및 통보 입법례 참조

5)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법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재판, 수사 등의 목적일 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사대상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통신자료제공제도가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⁶⁾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⁷⁾.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므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23. 12. 31.까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⁸⁾.

○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29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및 제83조의2)이 개정된 바 있음.

○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본인이 스스로 수사기관등(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6)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告知)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고 있음(헌재 1994. 7. 29. 선고 93헌가3등 결정; 헌재 1996. 1. 15. 선고 95헌가5 결정; 헌재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

7)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 2022헌마110, 2022헌마126(병합), 헌법불합치

8) 김나정·박소영,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과제,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04호, 2022. 10. 18.

보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거나(제20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사기관등(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41조)하지 않는 한⁹⁾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¹⁰⁾,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관련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2조제2항 각 호11))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수사기관등)가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0조제4항).

○ 그러므로, 개인정보 제공 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등¹²⁾)를 참고하여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처리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주기적으로(연 1회 이상) 알리도록 규정하는 것보다는 정보주체에 사후통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12) 각 조문은 【참고자료】 정보 제공 절차 및 통보 입법례 참조

-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주체에게 사후통지하는 것과 함께 전기통신사업자(제공자)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¹³⁾.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경찰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① 수사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개정안과 같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릴 경우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법령¹⁴⁾과 충돌할 여지가 있고, ②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요청 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범인에게도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사실이 알려져 범인 검거 및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③ 보호위원회 통보를 위한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요청·보유·처리 내역 집계는 현장 수사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¹⁵⁾되고, ④ 현재 수사기관은

13)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등에게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체계임.

14) 「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관련 법령¹⁶⁾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투명하게 처리 중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15) (경찰청 의견) 경찰 사건 접수건수는 2024년 기준 약 300만건으로, 사건에 따라 1건당 수십~수천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수사 대상자 목록, 수사기록 등),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내역(요청목적, 제공받은 항목, 이용기간, 처리내역 등)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통보해야 한다면, 전국 수사경찰은 개인정보 내역에 대한 관련 통계를 일일이 확인한 후 별도로 취합·정리한 후 통보해야 하며, 이는 수사현장에 상당한 수준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게 됨

16)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의무 확대 등

□ 개정안은 개인정보파일¹⁷⁾ 등록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의 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국가 안전 등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삭제하여 개인정보파일은 예외없이 모두 등록하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일부 또는 전부 공개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를 명시함(안 제32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1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u>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u> 2. <u>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u> <u>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u> <u>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u> <u>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u> <u>정보파일</u>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 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 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개인정보파일 4. <u>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u> <u>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u> <u>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u> <u>인정보파일</u> 5. <u>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u> <u>개인정보파일</u>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u>정보주체의 권리</u> <u>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u> <u>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u> <u>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u> <u>록 공개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u><신 설></u>	③ ----- ----- -----개인정보처 리자-----. ④ -----제1항----- -----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전부 또는 일부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u>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u> <u>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⑤・⑥ (생략)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u>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u> 2. <u>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u>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u>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u> 5. <u>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u> ⑤・⑥ (현행과 같음)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 ----- ----- -----제32조 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등록-----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함.

○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법 및 보유기간 등을 등록하여야 하고,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할 수 있음. 다만,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범죄의 수사 및 공소, 일회성 파일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제32조).

- 정보주체는 등록되는 개인정보파일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제37조제1항).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공개 예시 >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시스템명	항목	보유기간	부서명	...	운영근거
체육시설 예약	대표 홈페이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1년	○○부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15조 정보주체 의 동의
입사지원자 정보	채용관리 시스템	인적사항, 학력사항, 자격증 취득현황	채용 후 6개월	○○부		채용절차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	...	...	...		...

○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보호위원회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참고로,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파일을 관리 및 보호해야 하지만¹⁸⁾, 현행법상 이를 등록할 의무는 없음.

□ 그런데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민간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도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민간 영역은 공공기관에 비해 체계적인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관리가 미흡해 데이터 유출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민간 개인정보처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이에 개정안은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등록하도록 하며(안 제32조제1항·제2항),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파일

1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29조 등

공개를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고, ④ 기존 등록 제외 사항을 공개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안 제32조제4항), ⑤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포함) 전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 개정 내용 비교표 >

구분		현행법	개정안
개인 정보 파일	대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① 공공기관의 장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① 공공기관의 장 ②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민간)
	등록 사항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등	좌동
	등록 의무	①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관련 ②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관련 ③ 조세 및 관세 관련 범칙행위 조사 관련 ④ 일회성 파일 ⑤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	<삭제>
	보호위 권고	공공기관의 장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의 장 포함)
개인정보파일 공개		임의사항 보호위원회는 <u>정보주체의 권리 보장</u>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u>공개할 수 있다.</u>	의무사항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u>공개하여야 한다.</u>
		<신설>	<비공개사유>

구분	현행법	개정안
		①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관련 ②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관련 ③ 조세 및 관세 관련 범칙행위 조사 관련 ④ 일회성 파일 ⑤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원칙: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요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 가능 예외: <u>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 요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 가능</u>	원칙: 좌동 예외: <u>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등록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 요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 가능</u>

□ 주요 개정사항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안 제32조)와 관련하여서는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과 함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공공기관에 비추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로,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일부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보호위원회는 현행법 제30조에 따라 기업 등 민간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처리·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개정안에서는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유지, 형·감호의 집행, 범칙행위(조세범처벌법·관세법) 조사 등 관련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의 기밀성 및 국가안보 등을 고려할 때 보호위원회에 모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 둘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안 제37조)와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오히려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요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가 가능한데, 개정안에 따른 경우,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가 새롭게 부여

되는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전체가 아닌 ‘제32조에 따른 등록 대상’에 대해서만 처리정지 요구 및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개인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범죄 수사 등 관련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도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주요 국가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사전 등록보다는 내부 기록 보관 및 사후 감독이 일반적임.

- 유럽(EU)은 2018년 GDPR 이후 사전 등록보다는 자체 기록 및 감독체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등이 강조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모두 등록제는 없으며, 개인정보 처리 내역 자체의 보관 및 감독기관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¹⁹⁾.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 참고자료 】 정보 제공 절차 및 통보 입법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12. 29.>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12. 29.>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2023. 12. 29. 법률 제19856호에 의하여 2022. 7. 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2.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

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1.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19. 12. 31., 2021. 9. 24.>

④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19. 12. 31.>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19. 12. 31.>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19. 12. 31.>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12. 31.>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12. 31.>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05. 5. 26., 2019. 12. 31.>

[2019. 12. 31. 법률 제16849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

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9. 11. 26., 2020. 12. 29., 2025. 4. 1.>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중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25. 4. 1.>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2020. 12. 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2020. 12. 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③ 삭제 <2005. 1. 17.>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8. 13.>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4.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5.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6.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7.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 8. 13.>

⑩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⑪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관세 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⑫ 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 3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4.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그 밖에 심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0. 3. 24.>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04